

<b>보도</b>	<b>배포 시</b>	<b>배포</b>	2025.4.23.(수)		
<b>담당부서</b>	분쟁조정3국 사모펀드팀	<b>책임자</b>	<b>국 장</b>	김세모	(02-3145-5720)
		<b>담당자</b>	<b>팀 장</b>	송종호	(02-3145-5729)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 '25.4.22.(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

◆ '21.5.24.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

-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23.8.24, 보도자료)

\*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 환매 등

◆ 이에 따라 금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

$$\text{※ 손해배상비율} = \frac{\text{① 기본배상비율} + \text{② 공통가중비율}}{\text{[판매사 요인]}} \pm \frac{\text{③ 투자자별 가감}}{\text{[투자자 고려요소]}}$$

- 특히, '21.5월 기업은행(피신청인) 대상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하여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

\*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25% 적용

◆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

## I.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경

- 금융감독원은 '21.5.24. 분조위를 개최하여 기업은행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으며,

\*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64%로 결정

- 이후 '23년 동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힘\*

\*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23.8.24. 보도자료)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9월~'25.3월 美 SEC 및 美 운용사 법정관리인과의 수차례 화상회의, 자료요청 등을 통해 동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 검사 확보자료, 해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동 펀드 전체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 정황\*을 확인

\*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 부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 등

- 이후, 해외당국 등에 판매시점 동 펀드 기초자산 전체의 부실 여부·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 요청하였으나, '25.2~3월 자료 미보유,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최종 회신

- 한편, '25.1.9.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그 임직원 등의 글로벌채권펀드 관련 사기 혐의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음

⇒ 이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확인된 사항 및 법원 판결내용 등을 토대로 금번 분쟁조정을 실시

## II.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분쟁조정 개요

- **(분쟁현황)**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 중단('19.4월)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
  - '25.4.22. 기준 기업은행, 신영증권 대상 잔여 분쟁조정 건수는 총 42건 (기업은행 35건, 신영증권 7건)
    - ※ (참고) 전체 잔여 분쟁조정 신청 건 : 56건(5개 판매사)
  
- **(처리방향)**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사실상 손해가 확정되어 객관적인 손해 추정이 가능함에 따라,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 \*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

## III. 금융분쟁조정위원회('25.4.22.) 결정내용

### 1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 판단

- ◆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되었으나 부실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부재함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 다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
  
- 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매중단 펀드의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규모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나,
  -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 (다만,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객관적 증빙 부재\*로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 \* 美 SEC, 법정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최종 회신('25.2~3월)

-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사례 각 1건 모두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
  -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 (적합성 원칙 위반)<sup>[기업은행, 신영증권]</sup>
  -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 누락 (설명 의무 위반)<sup>[기업은행, 신영증권]</sup>
  -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림 (부당권유 금지 위반)<sup>[신영증권]</sup>

## 2 대표사례 손해배상비율 결정

◆ 손해배상비율은 ①기본배상비율, ②공통가중비율 및 ③투자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붙임1 참고)

- ①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 ②공통가중비율은 판매정책 및 내부통제 부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

$$* \text{손해배상비율} = \frac{\text{①기본배상비율} + \text{②공통가중비율}}{[\text{판매사 요인}]} \pm \frac{\text{③투자자별 가감}}{[\text{투자자 고려요소}]}$$

- ① (기본배상비율)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
  - \*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 3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 적용
- ② (공통가중비율) 상품선정·판매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 가산
  - 특히 양사 모두, 신규 확인사항을 감안시 펀드 부실위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 보임에도 펀드를 장기간 다회차\*\*에 걸쳐 판매하면서 리스크 점점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
    - \* 법원 판결문, 美 법정관리인 자료 등에서 기초자산 상당 부분 부실 정황 확인
    - \*\* (기업은행) 1년 5개월('17.9.27.~'19.2.13.)간 33회에 걸쳐 1,012계좌 판매 (신영증권) 1년 1개월('17.12.21.~'19.1.22.)간 11회에 걸쳐 198계좌 판매
  -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1.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하여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25%를 적용

③ (개별가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에 반영

\* (가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 (차감) 영리법인, 투자경험 등

➡ 투자자별(2건)로 각각 80%(기업은행) 및 59%(신영증권)를 배상토록 결정  
(☞ 붙임2 참고)

#### IV. 향후절차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기업은행, 신영증권)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 기업은행과 투자자 간 동 펀드 관련하여 '21.5월 분조위 조정안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화해의 효력이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번 공통가중비율 상향 취지, 보다 두터운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미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하는 등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검토가 기대된다는 분조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붙임1

## 배상비율 산정기준(안)

구분		배 상 비 율					
기본배상비율		구분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비율	
		*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법§9⑤)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당권유금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만 기본배상비율 25% 적용		위반 행위	○		
	○					20%	
					○		25%
○	○					30%	
○					○	35%	
○	○				○	40%	
배상 비율 조정	공통 가중		25 ~ 30%p	펀드 부실위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 보임에도 동 펀드를 장기간 다회차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체 리스크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가 부실한 점 판매규모, 검사체제 등 감안			
	가산 (0~30%)	고령투자자 * 법인은 대리인 기준	5 ~ 15%p	① 고령자(만65세이상) : 5% ② 초고령자(만80세이상) : 10% ③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시 : 추가 5%			
		서류 부실	5%p	가입신청서 등 필수서류상 확인란에 신청인 성명이나 서명 누락 등 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5%p	모니터링콜(해피콜) 미실시 또는 임의보완			
		비영리공익법인	5%p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목적의 자금운용이 제한되는 재단법인			
	차감 (0~Δ25%)	투자경험 * 조정대상 상품 가입일 이전 5년 이내, 당해 금융회사 기준	Δ2~ Δ5%p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경험 * 종목수 기준(동일 종목 우선주, 보통주는 합산), 국공채 등 제외 ** 기본 재산 형성을 위한 소액 적립식(월 50만원) 투자 제외 ① 6회~10회 : Δ2%p, ② 11회~20회 : Δ3%p, ③ 21회~30회 : Δ4%p, ④ 31회 이상 : Δ5%p			
		매입규모 * 비영리공익법인 적용 제외	Δ3~ Δ5%p	① 2억원 초과 ~ 3.5억원 이하분 : Δ3% ② 3.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 : Δ4% ③ 5억원 초과분 : Δ5%			
		글로벌채권펀드 수익경험	Δ1~ Δ5%p	분쟁조정대상 펀드 가입 이전에 동일 디스커버리 펀드에서 수익경험(정상상환)이 있는 경우 ① 1회 : Δ1%p, ② 2회 : Δ2%p, ③ 3회 : Δ3%p, ④ 4회 : Δ4%p, ⑤ 5회 이상 : Δ5%p			
		영리법인 * 전문투자자,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제외	Δ5~ Δ10%p	① 비외감법인 : Δ5%, ② 외감법인 : Δ10%			
	기타 조정		±10%p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 * (예) 사모펀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5%p 등 판매사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			

## **붙임2** 일반투자자 甲씨 및 乙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 기업은행 관련 甲씨(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성향이 '위험중립형'임에도 부적합한 고위험상품을 권유하였으며, 계약서류 부실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 **80% 배상**

판매직원은 甲씨의 투자자성향이 '보통위험(4등급)' 이하 펀드만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중립형'임에도 이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매우높은위험(1등급)' 펀드를 권유하였으며, 펀드 투자 결정 이후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

특히 甲씨는 이 사건 펀드 이전에 저위험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였으며, 사모펀드 가입 경험이 없음

판매직원은 펀드 설명시 안전장치가 있는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 누락

또한, 계약서류가 부실하고 펀드 가입 이후 모니터링콜을 미실시

- 신영증권 관련 乙법인의 경우,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불확실한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며 투자 권유 → **59% 배상**

판매직원은 乙법인의 투자권유 전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투자자금이 법인 대출금으로서 대출이자 절감을 위해 단기간 운용이 가능한 안정적 상품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투자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상품 권유

펀드 설명시 안전장치가 있는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 누락

투자권유시 "6개월씩 끊어서 투자할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이 있거든요. 연 4.4%예요"라고 설명하는 등 펀드의 불확실한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설명

※ 다만, 신청인이 영리법인이며 글로벌채권펀드 수익경험(1회)이 있는 점 등 고려